

No. 4656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on the promotion and protec-
tion of investments. Singapore, 2 December 2008**

Entry into force: *17 March 2009 by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Authentic texts: *English and Korean*

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 October 2009*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Singapour**

**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Singapour relatif à la promotion et à la
protection des investissements. Singapour, 2 décembre 2008**

Entrée en vigueur : *17 mars 2009 par notific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5*

Textes authentiques : *anglais et coréen*

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2 octobre 2009*

[KOREAN TEXT - TEXTE CORÉE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사이의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 아래부터 《체약쌍방》이라고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의 보다 폭넓은 경제적협조와 특히 체약일방의 투자가들이 체약상대방의 영역에 투자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한 투자의 장려 및 호상보호가 기업열의를 고무하고 두 나라의 번영에 기여할것이라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본 협정에서;

1) 《투자》란 체약일방의 투자가가 체약상대방의 영역에서 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 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류치권, 전당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들
- 나) 출자몫, 주식, 사채와 이와 유사한 회사리권들
- 다) 화폐에 대한 청구권이나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들

ㄹ) 지적소유권과 영업전통권

ㅁ) 자연부원의 탐사, 개간, 채취 및 개발리권을 포함하여 법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기업리권

2. 《수익금》이란 리윤, 리자, 재산판매소득, 리익배당금, 특허사용료나 로금을 비롯하여 투자에 의하여 산생되는 화폐적소득을 의미한다.

3. 《투자자》란 다음의 대상을 의미한다.

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해서: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그의 공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식 조직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소재지를 두고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상사, 협회나 단체들을 포함한 법률적실체들

ㄴ) 싱가포르공화국에 관해서:

i) 싱가포르공화국 헌법의 취지내에서 그의 공민으로 되거나 혹은 그의 법에 따라 싱가포르공화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임의의 사람

ii)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싱가포르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조직 혹은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임의의 회사, 상사, 협회나 단체

4. 《령역》이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자기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주권이나 관할권을 행사하는 령토, 령해, 전속경제수역과 대륙붕

ㄴ) 싱가포르공화국에 관해서는 싱가포르가 해양과 해저 및 해저심층,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자주권이나 관할권을 행사할수도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자기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수도 있는 령해밖에 위치한 해상수역을 포함한 그의 륵지령역과 국내수역, 령해

제 2 조 협정의 적용

1. 본 협정은 다음의 투자에만 적용된다.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계약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정부기관이나 당국이 자기의 법에 따라 허가한 싱가포르공화국 투자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투자

나) 싱가포르공화국 령역에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싱가포르경제개발청이나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계약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타 정부기관이나 당국에 의하여, 그리고 만일의 경우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그러한 조건들에 따라 서면으로 명백히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투자

2. 상기 항의 규정들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이전이나 이후에 계약상대방의 령역에 계약일방투자자들이 진행한 모든 투자에 적용되지만 그의 효력발생이전에 발생된 투자관련분쟁이나 해결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투자의 촉진 및 보호

1. 계약일방은 계약상대방투자자들이 자기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부합되는 투자를 자기 령역에 하도록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며 조성한다.

2. 제 2 조에 따라 승인된 투자는 본 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와 보호를 제공받는다.

제 4 조 자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체약일방은 투자의 관리, 유지, 운영, 경영, 판매나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자기의 영역에서 체약상대방의 투자자들과 그들의 투자에 유사한 상황에서 1) 다른 나라 투자자들과 그들의 투자 혹은 2) 자기측 투자자들과 그들의 투자에 제공하는 대우중에서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제 5 조 례 의

1. 제 3 국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것보다 못하지 않는 유리한 대우의 제공에 관한 본 협정의 조항들은 다음의것으로부터 제기되는 대우나 특혜 혹은 특전의 혜택을 체약일방이 체약상대방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체약일방이 현재 성원국이거나 성원국으로 될수도 있는 현존 혹은 장래의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기구, 공동시장, 통화동맹 혹은 이와 유사한 국제적인 협정이나 기타 지역적협조형태, 혹은 상기의 동맹이나 지대, 기구의 조직이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의 채택

2) 임의의 현존 쌍무투자협정들

3) 특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내에서 경제, 사회, 노동, 산업, 통화분야에서 지역적협조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같은 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나 국가들과 체결하는 임의의 합의서

2. 본 협정의 규정들은 체약일방의 영역에서 파세와 관련한 문제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들은 체약쌍방사이의 이중과세방지조약과 체약일방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된다.

제 6 조 물 수

1. 법에 근거한 임의의 목적에 한하여 비차별적기초에서 법에 부합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며 부당한 지연이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느 계약일방도 계약상대방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하여 몰수나 국유화조치 혹은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기타 조치(이 아래부터 《몰수》라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상기 보상금은 몰수직전의 몰수되는 투자의 가치와 같으며 계약일방의 법에 준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지불이 이루어져야 할 날로부터 실제적인 지불날까지 타당한 상업리자들에 따라 누적된 리자를 포함하여 보상받을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자유전환성화폐로 제 8 조(송금)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된다.

2. 몰수조치를 당한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몰수조치나 가치평가는 법에 규제된 방식으로 몰수조치를 취하는 계약일방의 사법당국이나 기타 독자적인 기관에 의하여 재검토될수 있다.

3. 계약일방이 자기 영역에서 시행되고있는 법에 따라 조직 혹은 설립된 회사의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계약상대방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있으면 이조 제 1 항의 규정들은 상기 주식소유자들인 계약상대방투자자들에게 거기에 명기된 보상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제 7 조 손해보상

계약상대방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장충돌, 국가비상사태, 반란, 폭동이나 소요로 인하여 자기의 투자에서 손해를 입은 계약일방의 투자자는 원상회복이나 배상, 보상 혹은 기타 해결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제 3 국 혹은 자기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우보다 못하지 않는 유리한 대우로서

들중에서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받는다. 보상금은 자유전환성화폐로 이루어지며 제 8 조(송금)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된다.

제 8 조 송 금

1. 계약일방은 계약상대방의 투자자들에게 비차별적기초에서 그들의 자본과 투자수익금의 자유로운 이전을 담보한다. 자금이전은 자유전환성화폐로 임의의 제한이나 부당한 지연이 없이 이루어진다. 상기 자금이전은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 특히 다음의것을 포함한다.

가) 리윤, 재산판매소득, 리익배당금, 특허사용료, 리자와 투자로부터 산생되는 기타 경상소득

나) 투자의 전부 혹은 부분적인 청산의 결과로 얻은 수입금

다) 투자와 관련한 대부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환금

디) 제 1 조 1. 근)에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한 특허실시허가료금

미) 기술지도, 기술봉사 및 기업경영관리협조와 관련한 지불금

비) 청부대상과 관련한 지불금

사) 계약일방의 영역에서 투자와 관련한 사업에 종사하는 계약상대방투자자들의 수입금

2. 이조 1 항의 그 어떤것도 본 협정 제 6 조와 제 7 조에 따라 지불되는 보상금의 자유로운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조 1 항과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방은 다음의 상황과 관련하여 평등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법적용에 기초하여 자금이전을 지체 혹은 차단할수 있다.

가) 파산, 채무초과,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이나 선물거래, 선택권거래 혹은 금융파생상품의 발급이나 거래 혹은 구입

ㄷ) 형사범죄나 범죄행위

ㄹ) 법집행이나 금융통제당국을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이전에 대한 재정보고서제출이나 장부보존

ㅁ) 판결이나 소송진행중의 명령이나 관정의 집행담보

ㅂ) 사회안전이나 공공퇴직제도, 의무저축제도

4. 계약일방은 심각한 지불수지악화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들에 따라 조치나 계획을 리행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자금이전을 제한할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평등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5. 본 협정의 제 6 조부터 제 8 조에 지적된 자금이전은 이전당일 시장환률에 따라 자유전환성화폐로 이루어진다.

제 9 조 증거법

계약쌍방은 임의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는 본 협정을 전제로 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계약일방의 영역에서 시행되고있는 법에 의하여 규제된다는것을 확인한다.

제 10 조 보험대위

1. 계약일방이나 그가 지정한 임의의 당국이나 기관, 단체 혹은 회사가 투자자의 전부 혹은 그의 일부분과 관련하여 제공한 보험의 결과로서자기측 투자자들의 임의의 청구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라 그들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계약일방이나 그가 지정한 임의의 당국이나 기관, 단체 혹은 회사가 보험대위에 립각하여 투자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주장할 자격을 가진다는것을 인정한다. 보험대위에 기초한 권리나 청구는 상기 투자자의 본래 권리나 청구를 초월하지 않는다.

2. 계약일방이나 그가 지정한 임의의 당국이나 기관, 단체 혹은 회사가 자기측 투자자들에게 하는 지불은 제 11 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할 투자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1 조 투자분쟁

1. 계약상대방령역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일방투자와 계약상대방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분쟁당사자들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는 자기의 의향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분쟁이 서면통지를 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 이조 1 항에 규정된데 따라 해결될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분쟁은 해당 투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기관들에 제기될수 있다.

가) 투자가 이루어진 령역에 있는 계약일방의 권한있는 재판소;

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운씨트랄)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¹

다) 계약쌍방이 1965 년 3 월 18 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들과 다른 국가공민들사이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본 협정에서 <<협약>>이라고 함)의 당사자인 경우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본 협정에서 <<센터>>라고 함)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라) 분쟁쌍방이 동의하는데 따르는 임의의 다른 중재기관이나 중재규칙에 따라

3. 계약쌍방은 투자분쟁을 국제중재나 조정에 제기하는데 취소불가능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협약 제 25 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것으로 본다.

¹ 운씨트랄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중재재판소의 소장은 계약쌍방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제 3 국의 공민이어야 한다.

4.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인 계약일방의 국내법과 규정들, 본 협정의 규정들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정들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요인들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린다. 재결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쌍방은 자기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재결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5. 어느 계약일방도 계약상대방이 분쟁에서 내려진 재결을 준수하고 따르는 한 투자가와 계약상대방이 이조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하였거나 제기한 분쟁에 대하여 외교적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인 배상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항에서 국제적보호는 분쟁해결만을 촉진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외교적교섭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12 조 계약쌍방사이의 분쟁

1.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계약쌍방사이의 분쟁은 가능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수 없는 경우 어느 계약일방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다. 중재재판소(이하 《재판소》라고 한다)는 3 명의 재결원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쌍방이 각각 1 명씩 임명하며 세번째 재결원은 재판소의 소장이며 계약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쌍방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 3 국의 공민으로서 계약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재결원임명요청접수날부터 2 개월내에 계약쌍방은 각기 1 명의 재결원을 임명하며 2 명의 재결원이 임명된 날부터 2 개월내에 계약쌍방은 세번째재결원을 임명한다.

4. 재결원임명요청접수날부터 4 개월내에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으면 계약일방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재결원(들)을 임명하여줄것을 요청할수 있다. 소장이 어느 계약일방의 공민이거나 그러한 임명을 할수 없는 경우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여 줄것을 요청할수 있다. 부소장이 어느 계약일방의 공민이거나 그러한

임명을 할수 없는 경우 어느 계약일방의 공민이 아니면서 부소장 다음가는 직위를 가진 국제사법재판소의 성원에게 필요한 임명 등을 하여줄것을 요청할수 있다.

5. 재판소는 다수가결로 결정을 채택한다.

6.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이며 계약쌍방은 재결조건을 준수하고 따른다.

7. 계약쌍방은 자기가 임명한 재판소의 성원과 중재수속에 참가한 자기측 대표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장의 비용과 나머지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자기의 결정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더 많은 몫의 비용을 부담할것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 재결은 쌍방에게 의무적이다.

8. 우에 지적된것외에 재판소는 수속절차와 관련한 자체규칙을 제정한다.

제 13 조 보다 유리한 규정 및 기타 의무

본 협정의외에 계약일방의 립법이나 계약쌍방사이에 현존하거나 차후에 설정되게 될 국제적인 의무들이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계약상대방투자자들의 투자에 적용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지위는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쌍방은 이 협정에 명기된것외에 자기의 법에 따라,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투자자들과 한 임의의 공약을 준수한다.

제 14 조 수 정

본 협정은 필요한 경우 계약쌍방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 수정될수 있다.

제 15 조 효력발생, 유효기간 및 종결

1. 계약쌍방은 각기 본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자기들의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된데 대하여 계약상대방에 통지한다. 본 협정은 어느 계약일방의 마지막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15년동안 효력을 가지며 그후부터 이 협정은 첫 14년이 만기된후 어느 계약일방이 협정을 종결시킬데 대한 자기의 의사를 서면으로 계약상대방에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종결통지는 계약상대방이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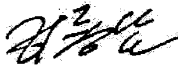
3. 본 협정의 종결에 관한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기전에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제 1 조부터 제 13 조까지의 규정들은 그날부터 15년동안 효력을 더 유지한다.

각기 자기 정부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본 협정에 수표하였다.

본 협정은 2008년 12월 2일 싱가포르에서 조선어와 영어로 2통 작성되었으며 모든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영문에 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무역상 리 룡남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무역 및 공업상 림 흥 키앙